

# 경산중앙교회 정관 개정(안)

- 신/구 조문 대비표 -

## 경산중앙교회

## 경산중앙교회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<b>제1조(명칭)</b>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(합동) 경산중앙교회(이하 본 교회)라 한다.</p> <p><b>제2조(소재지)</b>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동로 358에 둔다.</p> <p><b>제3조(목적)</b> 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성경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(이하 총회헌법)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, 교육, 봉사, 성도의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.</p>	<p>&lt;좌 동&gt;</p>	<p>개정사항 없음 (동일함)</p>
<p><b>제4조(사역)</b>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역을 한다.</p> <p>1.영혼 구원의 사역 :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 활동의 지속적 전개</p> <p>2.성도의 신앙 훈련: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</p> <p>3.주일학교 교육 : 교회의 차세대를 위한 신앙훈련</p> <p>4.치유와 상담사역 : 영육이 강건한 성도와 행복한 가정을 통한 교회 성장사역</p> <p>5.선교사역 : 가정과 직장, 지역사회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및 해외선교</p> <p>6.구제 및 봉사 사역 : 성도와 지역사회의 구제 및 봉사 사역</p> <p>7.장학 및 복지 사역 : 교회와 지역사회의 장학 활동과 복지 사역</p>	<p><b>제4조(사역의 종류)</b></p> <p>①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영혼 구원의 사역 :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 활동의 지속적 전개</p> <p>2.성도의 신앙 훈련: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</p> <p>3.주일학교 교육 : 교회의 차세대를 위한 신앙훈련</p> <p>4.치유와 상담사역 : 영육이 강건한 성도와 행복한 가정을 통한 교회 성장사역</p> <p>5.선교사역 : 가정과 직장, 지역사회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및 해외선교</p> <p>6.구제 및 봉사 사역 : 성도와 지역사회의 구제 및 봉사 사역</p> <p>7. 장학 및 복지 사역 : 교회와 지역사회의 장학 활동과 복지 사역</p> <p><u>8.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사역의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②본 교회는 위의 사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 등을 둘 수 있다. 법인설립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8호 추가</u></p> <p><u>②항 추가 :법인 설립 근거 마련</u></p>

<p>&lt;2장 교인 조항, 전면 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교인</b></p> <p><b>제5조(정의와 구분)</b></p> <p>①교인은 성부, 성자,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.</p> <p>②본교회의 교인은 <b>‘원입교인’, ‘학습교인’ ‘유아세례교인(입교 전)’, ‘세례교인(입교인)’</b>으로 구분한다.</p> <p><b>1.원입교인</b> :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, 정식으로 등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초신자로 아직 학습을 받지 않은 자.</p> <p><b>2.학습교인</b> : 원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후, 당회에서 실시하는 신앙 교리 문답(학습 문답)을 통과하고 회중 앞에서 학습 서약을 한 교인.</p> <p><b>3.유아세례교인(입교 전)</b> : 성도(세례교인인 부모)의 자녀로서, 만 6세 이하(혹은 헌법이 정한 유아 연령 기준)일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통해 세례를 받은 유아</p> <p><b>4.세례교인(입교인)</b>: 학습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성실히 교회에 출석하고, 만 14세 이상이 된 자가 당회의 세례 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공적으로 선언한 교인 (입교인: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, 당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문답을 거쳐 정식 교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)</p> <p><b>5.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한다.</b></p> <p><b>제6조(교인의 의무)</b></p> <p>①교인은 주일 성수와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, 집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교인은 진실된 노력과 협력,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.</p> <p>④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.</p>	<p>제2장 교인, 신설로 기존 2장 조직과 부서(제5조~제11조),제3장 재산 및 재정(제12조~제14조),제4장 선거 및 임면(제15조~제18조), (제5장 부칙)은 전체 장/조 번호가 각각 순연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⑤교인은 성경과 총회 헌법, 본 교회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.

#### **제7조(교인의 권리)**

①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.

②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은 공동의회 회원권(의결권, 선거권)을 가진다. 단, 본 정관이나 교단 헌법이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③모든 교인은 신앙 교육을 받고 영적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④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 헌법에 따라 교회(당회)와 교회 상급기관(노회, 총회)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.

⑤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,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권징이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.

⑥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고,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권리도 소멸된다.

#### **제8조(이적과 퇴회)**

①종직자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자 할 때에는 당회에 이명서를 청원할 수 있다.

②타 교회 종직자가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③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본인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,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. 퇴회자는 교인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.

#### **제9조(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)**

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인의 권리를 제한한다.

1.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교회의 치리(당회)에 복종해야 하며, 교인의 의무(예배 출석, 헌금, 교회 봉사 등)를 고의로 이행치 아니한 자와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할 수 있다.

	<p><u>2.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2년 이상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당회 의결로 장기결석자로 처리하며, 당회의 결의(또는 권징조례)에 따라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제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3.본 교회 정관 및 교단 헌법에 따라 시벌(징계)을 받은 자는 그 시벌 기간 동안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 또는 보류된다.</u></p> <p><u>4.당회 및 재판국을 통해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, 본 교회에 출입하여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의 평안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5.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던 자가 다시 교회의 의무를 다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청원할 경우, 당회의 심사를 거쳐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.</u>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조직과 부서</b></p> <p><b>제5조(조직과 부서)</b> 본 교회의 조직은 공동의회, 당회, 제직회로 구성하며, 기타 필요한 부서와 이에 따른 규정은 당회가 정한다.</p> <p><b>제6조(공동의회구성)</b> 공동의회 구성은 본 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으로 하고,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고,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무한다.</p> <p><b>제7조(공동의회)</b>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월 중에 담임목사가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(임시 공동의회는 필요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소집하며 안건을 처리한다.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당회의 경과 상황을 경청하는 일</li> <li>2.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관의 보고를 수락하는 일</li> <li>3.교회 재정의 결산과 예산안을 채용하는 일</li> <li>4.장로, 집사, 권사의 선거</li> <li>5.담임목사 청빙 투표</li> <li>6.치리장로 및 시무(안수)집사의 시무투표</li> <li>7.기타 발의한 안건처리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조직과 부서</b></p> <p><b>제10조(조직과 부서)</b> 본 교회의 조직은 공동의회, 당회, 제직회로 구성하며, 기타 필요한 부서와 이에 따른 규정은 당회가 정한다.</p> <p><b>제11조(공동의회구성)</b> 공동의회 구성은 본 교회 흠 없는 <b>세례교인(입교인)</b>으로 하고,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고,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무한다.</p> <p><b>제12조(공동의회)</b>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월 중에 담임목사가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 단, 임시 공동의회는 필요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소집하며 안건을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당회의 경과 상황을 경청하는 일</li> <li>2.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관의 보고를 수락하는 일</li> <li>3.교회 재정의 결산과 예산안을 채용하는 일</li> <li>4.장로, 집사, 권사의 선거</li> <li>5.담임목사 청빙 투표</li> <li>6.치리장로 및 시무집사의 시무투표</li> <li>7.기타 발의한 안건처리</li> </ol>	<p>기존 제2장 조직과 부서→<a href="#">제3장 조직과 부서</a></p>

<p><b>제8조(당회구성)</b>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(시무행정장로)로 구성하며,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서기 부서기, 회계 각 1인을 둔다.</p> <p><b>제9조(당회)</b>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정기 당회는 매월 1회, 임시 당회는 필요시 당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</li> <li>2.예배와 성례식을 엄숙히 행하는 일</li> <li>3.교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하는 일</li> <li>4.각종 명부록 비치관리 및 법을 어긴 교인에 대한 권징하는 일</li> <li>5.장로·집사·권사의 후보지명과 임직에 관한 일</li> <li>6.교역자 청빙과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일</li> <li>7.교회의 각 국과 부서를 정하고 책임자를 선정하는 일</li> <li>8. 교회의 각 기관 및 부설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일</li> <li>9.예산편성 및 각종 헌금 수집 방안(추경포함)을 세우는 일</li> <li>10.교회 재정에 관한 사무와 금전출납을 지도 감독하는 일</li> <li>11.교회의 재산을 장리하는 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리와 재산의 취득, 처분, 증여, 매매, 변경, 관리 및 차입, 담보제공 등을 결의하는 일</li> <li>12.정관의 심의 및 시행세칙, 규정, 규약, 기준,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일</li> <li>13.노회 파송할 총대를 선정 하는 일.</li> <li>14.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/ol> <p><b>제10조(제직회구성)</b> 제직회는 본교회 서리집사 이상으로 구성하며,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서기 1인, 회계 1인(재정부장)을 둔다.</p> <p><b>제11조(제직회)</b> 정기 제직회는 매년 4회 이상 분기별 1회로,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을 처리하는 일</li> <li>2.재정의 예산 결산 처리 보고하는 일</li> </ol>	<p><b>제13조(당회구성)</b>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(시무행정장로)로 구성하며,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, 서기, 부서기, 회계 각 1인을 둔다</p> <p><b>제14조(당회)</b>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고, 당회장은 본교회 대표자가 되며, 정기 당회는 매월 1회, 임시 당회는 필요시 당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</li> <li>2.예배와 성례식을 엄숙히 행하는 일</li> <li>3.교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하는 일</li> <li>4.각종 명부록 비치관리 및 법을 어긴 교인에 대한 권징하는 일</li> <li>5.장로·집사·권사의 후보지명과 임직에 관한 일</li> <li>6.교역자 청빙과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일</li> <li>7.교회의 각 국과 부서를 정하고 책임자를 선정하는 일</li> <li>8.교회의 각 기관 및 부설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일</li> <li>9.예산편성 및 각종 헌금 수집 방안(추경포함)을 세우는 일</li> <li>10.교회 재정에 관한 사무와 금전출납을 지도 감독하는 일</li> <li>11.교회의 재산을 장리하는 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리와 재산의 취득, 처분, 증여, 매매, 변경, 관리 및 차입, 담보제공 등을 결의하는 일</li> <li>12.정관의 심의 및 시행세칙, 규정, 규약, 기준,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일</li> <li>13.노회 파송할 총대를 선정 하는 일.</li> <li>14.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/ol> <p><b>제15조(제직회구성)</b> 제직회는 본교회 당회원, 시무사역장로, 시무집사, 권사로 구성하며,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, 무임집사, 무임권사에 게 제직 회원권을 줄 수 있으며,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서기 1인, 회계 1인을 둘 수 있다.</p> <p><b>제16조(제직회)</b> 정기 제직회는 매년 4회 이상 분기별 1회로,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을 처리하는 일</li> </ol>	<p>기존 제9조(당회) →개정 제14조(당회)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p>3.예산안 편성과 수립 및 통과하는 일 4.공동의회에 경과 상황과 수지결산 보고하는 일 5.구제비 수입지출을 관장하는 일 6.기타 발의한 안건처리</p>	<p>2.재정의 예산 결산 처리 보고하는 일 3.예산안 편성과 수립 및 통과하는 일 4.공동의회에 경과 상황과 수지결산 보고하는 일 5.구제비 수입지출을 관장하는 일 6.기타 발의한 안건처리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재산 및 재정</b></p> <p><b>제12조(재산)</b> 1.본 교회의 재산은 토지, 건물, 시설 등의 부동산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, 기타재산은 차량, 금융상품, 현금 등으로 한다. 2.본 교회 모든 재산의 소유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.</p> <p><b>제13조(재정)</b> 본 교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. ①십일조헌금 ②주일헌금 ③ 감사헌금 ④절기헌금 ⑤특별헌금 ⑥기타헌금 ⑦이자수입 등</p> <p><b>제14조(회계감사)</b> 당회에서 임명된 감사는 본 교회와 각 기관의 회계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장 재산 및 재정</b></p> <p><b>제17조(재산)</b> ①본 교회의 재산은 토지, 건물, 시설 등의 부동산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, 기타재산은 차량, 금융상품, 현금 등으로 한다. ②본 교회 모든 재산의 소유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.</p> <p><b>제18조(재정)</b> 본 교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. 1.십일조헌금 2.주일헌금 3.감사헌금 4.절기헌금 5.특별헌금 6.기타헌금 7.이자수입 등</p> <p><b>제19조(감사)</b> 당회 감사위원회는 본 교회와 각 기관의 회계 감사와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감사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장 재산 및 재정→제4장 재산 및 재정 각 조항은 순연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장 선거 및 임면</b></p> <p><b>제15조(장로·집사·권사의 후보 선택방법)</b> 1.장로 집사 권사의 후보는 교회에서 작성한 피선거권자 자료를 근거로 다음 사항을 별도양식에 의거 평가한다. ①공예배 출석상황 ②교회봉사활동 실적 ③전도실적 ④헌금실적 ⑤사회활동</p> <p>2.피선거권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당회에서 심의 검토한 후, 당회원의 비밀투표를 거쳐, 당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최다득표자부터 정원의 130%(1.3)배수까지 후보자로 확정한다. 단, 동점일시에는 연장자로 하고 정원 미달 시는 남은 정원만큼 재투표를 실시한다.</p> <p><b>제16조(장로·집사·권사의 선거방법)</b> 1.장로는 본 교회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장로 수를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, 교회에서 제출한 자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5장 선거 및 임면</b></p> <p><b>제20조(장로·집사·권사의 후보 선택방법)</b> ①장로, 집사, 권사의 후보는 교회에서 작성한 피선거권자 자료를 근거로 다음 사항을 별도양식에 의거 평가한다. 1. 공예배 출석상황 2. 교회봉사활동 3. 전도 4. 헌금 5. 사회활동 6.교육(훈련)과정 &lt;추 가&gt;</p> <p>②피선거권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당회에서 심의 검토한 후, 당회원의 비밀투표를 거쳐, 당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최다득표자부터 정원의 130%(1.3)배수까지 후보자로 확정한다. 단, 동점일시에는 연장자로 하고 정원 미달 시는 남은 정원만큼 재투표를 실시한다.</p> <p><b>제21조(장로·집사·권사의 선거방법)</b> ①장로는 본 교회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장로 수를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, 교회에서 제출한 자</p>	<p>제4장 선거 및 임면→제5장 선거 및 임면 각 조항은 순연</p>

<p>료에 의거 당회에서 심사하여 승인 받은 정원의 130%(1.3)배수를 후보자를 선정한다.</p> <p>2.공동의회에서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<u>2/3 이상</u>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.</p> <p>3.시무(안수)집사.권사의 선거는 장로 선거방법을 준용한다.</p> <p>4.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자를 제5항의 교회 소정교육을 받도록 한다.</p> <p>5.각 후보자별 교회 소정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.  ①장로 : 15주 ②집사 : 12주 ③권사 : 8주 단, 교회 소정교육기간은 당회가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7조(취임승낙)</b> 피선된 장로는 노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인된 자로 하고, <u>시무(안수)집사</u>.권사는 당회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당회가 임직한다.</p> <p><b>제18조(사직과 사면)</b></p> <p>1.치리장로, 집사, 권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. 치리장로와 <u>시무(안수)집사</u>는 7년에 1차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, 장로는 만65세에 이르면 시무투표를 하며, 그 표결 수는 공동의회 투표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 단, 시무행정장로가 만65세에 이르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무투표를 받지 않고 시무사역장로 원할 경우 당회에서 의결한다.</p> <p>2.장로 혹은 집사가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교회의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.</p> <p>3.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 지라도 전항의 사건과 비슷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도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사면 혹은 사직하게 한다.</p> <p>4.<u>18조 1항에 의거하여</u> 본 교회에서 치리장로를 마친 장로는 만70세까지 사역장로로서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.</p>	<p>료에 의거 당회에서 심사하여 승인 받은 정원의 130%(1.3)배수를 후보자를 선정한다.</p> <p>②공동의회에서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<u>3분의 2이상</u>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.</p> <p>③<u>시무집사</u>.권사의 선거는 장로 선거방법을 준용한다.</p> <p>④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자를 제5항의 교회 소정교육을 받도록 한다.</p> <p>⑤각 후보자별 교회 소정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.  1. 장로 : 15주 2. 집사 : 12주 3. 권사 : 8주 단, 교회 소정교육기간은 당회가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<b>제22조(취임승낙)</b> 피선된 장로는 노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인된 자로 하고, <u>시무집사</u>.권사는 당회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당회가 임직한다.</p> <p><b>제23조(사직과 사면)</b></p> <p>①<u>치리장로(시무행정장로)</u>, 집사, 권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.</p> <p>②<u>치리장로(시무행정장로)</u>와 <u>시무집사</u>는 7년에 1차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, 장로는 만 65세에 이르면 시무투표를 하며, 그 표결 수는 공동의회 투표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 단, 시무행정장로가 만 65세에 이르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무투표를 받지 않고 시무사역장로 원할 경우 당회에서 의결한다.</p> <p>③장로 혹은 집사가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<u>교회원의 과반수 이상</u>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.</p> <p>④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 지라도 전항의 사건과 비슷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도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사면 혹은 사직하게 한다.</p> <p>⑤<u>제23조 1항에 의거하여</u> 본 교회에서 <u>치리장로(시무행정장로)</u>를 마친 장로는 만 70세까지 사역장로로서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.</p>	
---	--	--

**부 칙**

**제1조(규칙변경)** 본 정관의 수정 변경은 당회의 2/3이상의 동의와 공동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**제2조(통상규칙)**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헌법과 통상규칙,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.

**제3조(경과규정)** 삭제

**제4조(당회의 성원과 의결)** 당회의 성원과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교회재산 및 대표자 명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 2/3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시행)** 본 정관은 2023년 1월 공동의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- \*정관제정소위원회 : 장로 이재희 정승복  
이영호 김판도 백문홍
- \* 제 정: 2003.12.28.
  - \* 제1차개정: 2007.12.30.
  - \* 제2차개정: 2023.01.01.

당회장 : 담임목사 김종원  
서 기: 박창곤 장로

당회원 : 장로 박창곤 박성철 권형철 김영석  
허우출 천종근 박재봉 김도연 박요섭 신동근  
임경희 정연욱 정해수 모홍필 박승규 이광희  
황용곤 장성기 장주석 송형섭 손무생 김태영  
박정규 전대영

**부 칙**

**제1조(규칙변경)** 본 정관의 수정 변경은 당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,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개정한다.

**제2조(통상규칙)**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헌법과 통상규칙,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.

**제3조(경과규정)** 삭제

**제4조(당회의 성원과 의결)** 당회의 성원과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교회재산 및 대표자 명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**제5조(시행)** 본 정관은 2023년 1월 공동의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- \*정관제정소위원회 : 장로 이재희 정승복  
이영호 김판도 백문홍
- \* 제 정: 2003.12.28.
  - \* 제1차개정: 2007.12.30.
  - \* 제2차개정: 2023.01.01.

당회장 : 담임목사 김종원  
서 기: 박창곤 장로

당회원 : 장로 박창곤 박성철 권형철 김영석  
허우출 천종근 박재봉 김도연 박요섭 신동근  
임경희 정연욱 정해수 모홍필 박승규 이광희  
황용곤 장성기 장주석 송형섭 손무생 김태영  
박정규 전대영

**부 칙**

본 정관은 2026년 7월 공동의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- \* 제 정: 2003.12.28.
- \* 제1차개정: 2007.12.30.
- \* 제2차개정: 2023.01.01.
- \* 제3차개정: 2026. 00.00.

제5장 부칙 →  
제6장 부칙으로  
순연

	<p><u>당회장 : 담임목사 김종원</u> <u>서 기 : 천종근 장로</u> <u>당회원 : 장로 권형철 천종근 박재봉 김도연</u> <u>박요섭 신동근 임경희 정연욱 박승규 이광희</u> <u>황용곤 장성기 장주석 송형섭 손무생 김태영</u> <u>박정규 전대영 김인환 조영동 이안용 이정호</u> <u>문영백 박재욱</u></p>	
--	--	--

<끝>